

대법원 2017. 4. 28 선고 2017다4263 판결 [보증채무금]

재판경과

대법원 2017. 4. 28 선고 2017다4263 판결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12. 15 선고 2016나11577 판결

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1. 8 선고 2014가소575704 판결

전문

원고, 피상고인A (개명 전 성명 : B)

피고, 상고인C

판결 선고 2017. 4. 28.

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. 12. 15. 선고 2016나11577 판결

주문

상고를 기각한다.

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이유

상고이유를 판단한다.

이 사건은 소액사건이므로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각 호의 사유가 있어야 상고할 수 있는데, 상고이유 주장은 그에 해당하지 아니한다.

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,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.

재판장대법관김용덕

대법관김신

주심대법관김소영

대법관이기택